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 조례를 마련하고,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연결허가 신청 및 기준,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부대시설,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구미시가 도로관리청이 되는 동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와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등의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허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실정에 맞는 도로 여건 조성으로 교통 흐름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